

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체육진흥과

제정 2022· 4· 22 조례 제1835호
일부개정 2023· 3· 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3· 9· 27 조례 제1981호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
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천시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·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단원”이란 이천시 시민축구단(이하 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 소속의 감독, 코치, 선수를 말한다.
2. “지도자”란 단원 중 감독, 코치를 말한다.

제3조(시민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) ① 시민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단원은 시민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단원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시민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석할 수 있다.

⑤ 시민축구단은 시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·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
제4조(구성 및 임명) ① 시민축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단원으로 구성한다.

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

② 단장은 체육지원업무 담당국장,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·3·6>

③ 단원의 수는 감독 1명, 코치 2명 이내, 선수 30명 이내로 한다.

제5조(직무) ①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축구단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감독은 선수 훈련과 경기를 지휘·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,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.

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.

제6조(단원의 자격) ① 지도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5세 이하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3·9·27>

1. 아시아축구연맹(AFC)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(KFA) C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

2.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

② 선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,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 <개정 2023·9·27>

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,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시에서 출생한 자

2. 타 지역 출생자이나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를 1개 이상 졸업(예정자 포함)한 자

3.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
제7조(지도자 고용계약) ① 지도자는 공개채용 모집 후 심사를 거쳐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고용계약 한다.

② 고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,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.

제8조(지도자 인사관리) 지도자에 관한 인사관리는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

라 한다)에서 대행한다.

제9조(선수 위촉)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거나 입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테스트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해임 및 해촉)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
3.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연속 2회 이상 출전하지 않는 경우
 - 나. 정기훈련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- 다. 정기훈련에 분기별 2분의 1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
 - 라.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다른 축구단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
5.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6.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
7.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8.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9.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(겸직금지) 지도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2조(보수 등의 지급)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용료 면제) 시장은 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3장에도 불구하고, 시민축구단이 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관리) ① 시민축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㉔ 「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체육지원센터소장”을 “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㉕ 생략

부칙 <2023·9·27 조례 제1981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